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2872(본소), 2023가단250114(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최우석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465,000원 및 그중 9,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4.부터, 33,66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2.부터, 6,805,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4.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2020.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에메랄드그린 70그루, 단풍나무 6그루, 측백나무 100그루를 대금 19,6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사업소득 3.3%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함, 이하 같다)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계약에 따른 선금금 9,800,000원에서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9,476,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2020. 6. 2.부터 같은 달 6.까지 에메랄드골드 152그루, 에메랄드그린 8그루, 단풍나무 R20 16그루, 단풍나무 R15 12그루, 자작나무 5그루, 사철나무 1,000그루, 공작단풍 1그루를 대금 67,320,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 사건 1차계약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1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금금 9,800,000원을 선금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2차계약에 따른 선금금 33,600,000원 중 이 사건 1차계약의 선금금으로 지급한 9,800,000원을

공제한 23,860,000원에서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23,072,6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대금 13,610,000원에 수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계약 및 2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17.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른 선금금 6,805,000원에서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6,580,43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수목을 납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납품된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계약의 수목납품대금 중 선금금 50%는 계약 시, 잔금 50% 납품 완료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① 나무 공급 전 피고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② 피고가 승인한 사진의 나무를 공급하지 않을 시 잔금에서 유예한다.”는 내용이 위 각 계약의 기타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20. 7. 3. 및 같은 달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2차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라 납품한 나무가 고사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는 고사한 나무를 7일 안에 교체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20.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2조(합의내용) 2. 원고가 위 납품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한 나무가 하자 및 고사한 관계로 원고가 사정으로 교체하여 줄 수 없어서, E조합 F으로부터 교체납품받기로 한다.

3. 원고가 교체하여야 하는 나무를 F에게 지급받고, 원고와 피고는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교체한 나무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F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F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원고는 F이 하자 및 고사 나무 교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계약(1차 계약상 선급금은 2차 계약상 선급금의 일부로 충당됨) 및 추가계약의 잔금 40,46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이 사건 수목은 모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납품 직후 고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목의 교체를 요구하자 원고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품한 수목을 교체해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F에게 수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현장의 수목이 교체되지 않았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선급금 합계 40,465,000원 및 피고가 2020. 6.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조경업체에 지급한 2,000,000원 합계 42,4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수목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합계 40,465,000원의 선급금(원천징수한 금액 포함)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잔금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40,465,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목이 고사한 것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확인을 받아 수목을 현장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수목을 납품받을 당시 수목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수목을 납품할 당시 뚜렷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G는 2020. 6. 9.경부터 원고가 납품한 수목을 이 사건 현장에 식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고사가 하자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2020. 7. 3.과는 약 1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수목의 고사가 수목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이 사건 현장이 수목이 식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F은 2020. 7. 16.경 피고 소속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피고에 수목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로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품한 수목이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고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